

2004. 12. 7

제115회 정례회 산건위 제1차회의

# 조 례 안 검 토 보 고

- ① 거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- ②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- ③ 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# □ 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4. 12. 1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4. 12. 1
- 라. 의안번호 : 제2004 - 54호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개정이유

○ 농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된 「농지취득자격의 확인」 사항이 2002.12.31자 삭제되었고, 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○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례 제4조 3호를 삭제

○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례 제4조 4호, 5호의 규정을 삭제

○ 농지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례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삭제

### 3.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사항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○ 현재 읍·면농지위원회는 읍·면별 17~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농지 전용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조사 등을 위하여 개최하나,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5인이내 소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○ 2002. 12. 31자 농지취득자격 확인제도는 근거규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3.1.1부터 읍면에서는 이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, 법 개정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임.

# 4.

46 ( )  
 農地 貸借 市(區 市, 都農  
 複合形態 市 洞地域 節 )·區(都農複合形態 市  
 區 洞地域 節 )·邑 面 農地管理委員會  
 ( "委員會" ) , 管轄區域 農地가 市·區·邑 面

地域 特性 農地分布 實態  
 大統領令 2 市·區·邑 面 委員會  
 . <改正 96·8·8, 2002·1·14>

47 ( )  
 委員會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10人 40人 委員  
 委員會 委員 各號 者가 .  
 委員長 市·區·邑·面長 , 副委員長 委員 , [第46條第](#)  
[2項](#) 農地 市·區·邑·面長 委員長  
 委員長 [第48條第4號](#) 規定 委員長  
 5人 小委員會 . 小委員會 議決 委員會  
 議決

48 ( )  
 委員會 各號 管掌 . <改正 99·3·31>  
 1. [第10條第1項](#) 規定 農業經營 農地 調查  
 2. [第16條](#) 規定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 諮問  
 3. 削除 <99·3·31>  
 4. [第36條第1項](#) 規定 農地轉用許可 [第37條](#) 規定 農地轉用申告  
 5. 農地 大統領令

69 ( )  
48 5 " "  
 . < 99·12·28 16647>  
 1.  
 2. 39 2  
 3. 18  
 4.

8 ( ) -	8 <2002·12·31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## ㉔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사항

○ 제출 일 : 2004. 12. 1

○ 제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2.1

다. 의안번호 : 제2004 - 55호

#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○ 종전 「재난관리법」의 규정에 따라 예규로 운영되던 “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”을 「재난관리법」에 대체 시행되는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는 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“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”를 폐지하고 “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”로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는 위원장(군수)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비롯한 관내 주요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당연직 위원 12인과 기타 재난관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위원으로 하도록 규정.(안 제3조)

○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 1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.(안 제6조)

○ 필요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
○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함.(안 제12조)

○ 종전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거창군안전대책위원회를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토록 하고, 종전의 운영규정은 폐지토록 규정함.(부칙 제2, 3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동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,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“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”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○ 종전 재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와 동 조례 내용과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

- 위원중 당연직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기획감사실장, 경제과장, 지역개발과장을 추가하여 12인으로 이는 재난관련 예산편성 및 주요 관련부서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,

-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례에서는 폐지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중복심의에 따른 행·재정적 낭비요인 제거, 필요시 조례안 제9조에 의한 의견협조요청 가능한 점과 실무위원회의 의결권

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외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.

- 종전 규정에서는 정기회를 상·하반기 2회 개최토록 규정한 것을 동 조례안에서는 1회로 정한 것은 이는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그 동안 정기회도 1회 개최(서면심의)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능률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, 도에서 시달된 표준(안)과 종전의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

(2004. 3.11 : 7186 )

11 ( )

· , ·

· ( “ · ” ) · ( “ · ” )

) , · ( · )

( “ · ” ) ·

· 가 , ·

·

· ( “ ” )

,

·

12 ( )

1. ·
2. ·
3. ( · )
4. ·
5. 2 ( ) ·

### 3

## 1. 검토경과

### 가. 제출사항

○ 제출 일 : 2004. 12. 1

○ 제출 자 : 거창군수

### 나. 회부일자 : 2004. 12. 1

### 다. 의안번호 : 제2004 - 56호

## 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제정이유

○ 2004.3.11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되면서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“거창군안전관리자문단”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골자

○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토록 규정함(안 제2조)

○ 위원회 개최는 정기회 1회를 개최토록 하되,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,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.(안 제6조)

○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
○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
○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

○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8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동 조례는 각종 안전대책수립, 건축물, 교량 등의 특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군수의 자문과 안전점검 등을 담당할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근거를 조례로써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률에서는 설치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○ 동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, 표준(안)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형식이나 내용등이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

(2004. 3.11 : 7186 )

75 ( . )

가

1